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May, 2024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

2024 년 3 월 22 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경외이전 안전평가 신고지침(제 2 판)”,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 비안지침(제 2 판)”을 발표하여 이전의 데이터 경외이전 관련 규제 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임항신편구 첨단 중점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 별시행세칙>의 발행에 관한 통지
02.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및 임원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그 변동관리규칙 (2024 년 개정)
03. 상장회사 주주의 지분감소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
04. 부동산등기 임시조례 시행세칙(2024 개정)

■ 법률 뉴스 ■

2024년 3월 2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경외이전 안전평가 신고지침(제2판)”,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 비안지침(제2판)”을 발표하여 이전의 데이터 경외이전 관련 규제 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 데이터 경외이전 안전평가 신고기준 명확화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은 안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한 데이터를 인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 또는 지역에서 중요 데이터로 공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중요한 데이터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개인 정보 또는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해외이전 면제

“규정”에 따르면 국제무역, 국경 간 운송, 학술협력, 다국적 생산제조와 마케팅 등 활동에서 수집·생성된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경외이전 안전평가 신고,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보호 인증통과를 면제합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자가 해외에서 수집 및 생성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한 후 경외에 제공하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경외이전 안전평가 신고,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통과를 면제합니다.

3. 일부 개인 정보 경외이전 면제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일방의 당사자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규정과 체결된 단체계약을 통해 국경간 인력자원관리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 긴급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핵심정보 기반시설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그해 1월 1일부터 누계로 10만 명 미만의 비민감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등 상황에서 중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한 데이터 경외이전 안전평가 신고,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통과를 면제합니다.

4.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설립

“규정”에 따르면, 자유무역시험구는 국가 데이터 분류 및 등급 보호제도의 틀 안에서 데이터 경외이전 안전평가,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서, 개인정보 보호인증 관리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 리스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라 함)를 자체로 제정할 수 있으며, 성급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인터넷 정보부서, 국가데이터 관리부서에 비안해야 합니다. 자유무역구 내의 데이터 처리자가 해외에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경외이전 안전평가 신고,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통과를 면제합니다.

5.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와 개인정보 해외이전 표준계약 및 인증제도 세분화

“규정”은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 핵심정보 기반시설 운영자가 개인 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2) 핵심정보 기반시설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하거나, 그 해 1 월 1 일부터 총 100 만 명 이상의 비민감 개인정보 또는 1 만 명 이상의 민감 개인정보를 누적하여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3 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유효기간 만료 후 60 영업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추가로 3 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핵심정보 기반시설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당해 1 월 1 일부터 해외에 10 만 명 이상 100 만 명 미만의 비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1 만 명 미만의 민감 개인정보를 누적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해외 수신자와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규정”은 일부 데이터의 해외이전 상황에 대한 신고 면제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준법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규제 절차의 면제가 규정 준수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여전히 자체 상황에 맞는 데이터 국경 간 규정 준수 전략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이행하며, 중요 데이터의 인식 및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데이터 보안 대응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합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임항신편구 첨단 중점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시행세칙>의 발행에 관한 통지 
02.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및 임원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그 변동관리규칙 (2024 년 개정) 
03. 상장회사 주주의 지분감소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 
04. 부동산등기 임시조례 시행세칙(2024 개정) 

범무법인[유] 지평